



구비서류

1.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

가.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유서

나. 훼손된 경우 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. 다만,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,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
가.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. 다만,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,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